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9
----------	-----

제출년월일 : 1998.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해서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실질적으로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까지 감면혜택 부여.

☐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차량 범위확대(안제2조2항)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 15人以下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까지 확대.

나.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는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규정 신설(안제2조3항제4호)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 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2조의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 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 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으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 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 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 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 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 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 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 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부터 매매의알선을 위하여 제시 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 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 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 동차

현행	개정안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신설>	4. 이륜자동차
<신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종전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신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 ----- ----- ----- ----- -----자 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

현행	개정안
<신설>	1.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신설>	2.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신설>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신설>	4.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4.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파주시 의회 제16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파 주 시 장 송 달 용

1997년. 12월. 31일

조례 제 195 호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파주시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는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문서유통량 20% 줄이기”

경 기 도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0331) 249-4153 / 담당자 최 영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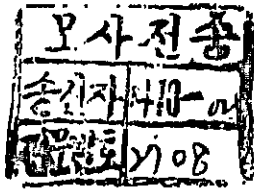
문서번호 세정 13400 - 277

시행일자 1998. 2. 18. (년)

(경유)

발육 발는곳 참조

참조



선			지	
결			시	
접	일자	98.2.20	결	국장
	시간		제	과장
수	번호	1122	·	전결
			금	계장
처	리	과	람	담당
리	시	세		과장
과	계	계		담당
담	김	영		과장
당	용			담당
자				과장

제목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

1. 내무부 세제 13400-37('98.2.12)호 및 13400-41('98.2.16)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지원 방안중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조치하는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의회의결 등 제반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바라며,
3. 시·군에서 감면조례개정시 표준안과 달리 조례내용을 규정할 경우(단순자구 수정은 제외)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덧붙임 :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내무국장 전결



발는곳 : 러 【세정(세무, 재무, 부과, 징수)과장】

경기도○○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유공자등에우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험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제1항중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을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4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시 · 군세)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u>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u>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u>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u>.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u>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u>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u>

현행	개정안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이 인정하는 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하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신 설 >	4. 이륜자동차
< 신 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신 설 >	1.~3.(종전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험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험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 - - - - - - - - -
< 신 설 >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신 설 >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 신 설 >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신 설 >	4. 이륜자동차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 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 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 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신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